

국회정보공개규정

2006.9.26 국회규정 제593호 전부개정
개정 2009.5.26 국회규정 제642호
개정 2015.5.22 국회규정 제770호
개정 2016.11.14 국회규정 제793호
개정 2017.10.11 국회규정 제815호
개정 2018.4.12 국회규정 제825호
개정 2022.3.29 국회규정 제9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회정보공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2]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국회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개정 2022.3.29>)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이송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0.11>

②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3.2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중 공개 청구된 정보가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신설 2022.3.29>

1. 소속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2022.3.29>

②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29]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3.29>

제6조(정보공개방법) 공개대상 문서내용 중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그 밖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6]

제6조의3 삭제<2022.3.29>

제7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금액) ①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5.22>

②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신설 2015.5.22>

제9조(이의신청처리 관련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5.22>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④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2]

제10조(자료제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93호, 2006.9.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2호,2009.5.26>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15.5.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3호,2016.11.14>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7.10.11>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8.4.1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22.3.29>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4.12, 2022.3.29>

수수료(제8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개정 2022.3.29>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부서/담당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p> <p>(기 관 의 장) 인</p>			

정보공개 청구서

문서번호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내용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면사유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문서번호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휴 대 전 화 번 호 (또는 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팩 스 번 호	
청 구 내 용			
공 개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감 면 사 유		
의 견 청 취 자 (담 당 공 무 원 등)	직 급	성 명	서 명 또는인
구 술 자 인 (청 구 인)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 급
			성 명
	일반인 경우	성 명	서 명 또는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성명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10.11, 2022.3.29>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접수번호	
정보공개청구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p>			
년 월 일			
(기 관 의 장)		인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청 구 내 용	청구 방법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210mm×297mm 일반용지

※ 기재요령

1. “청구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한다.
2. “청구방법” 항목에는 직접출석·우편송부·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이 청구를 신청한 방법을 기재한다.
3.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한다.
4.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소속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5.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한다.
6.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소속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한다.
7.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한다.
8.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문서번호

제 3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 전화 번호 : (또는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 전 자 우 편 주소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

청 구 인	성 명		주 소	
-------	-----	--	-----	--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	--	--	--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총 합 의 건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허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요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과「국회정보공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제3자 의견 청취서

문서번호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의 건 청 취 일 시									
의 건 청 취 내 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 건 청 취 자 (담당공무원 등)	직 급				성 명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 관 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는 인
						성 명			
		연 락 처							
	일 반 인 인 경 우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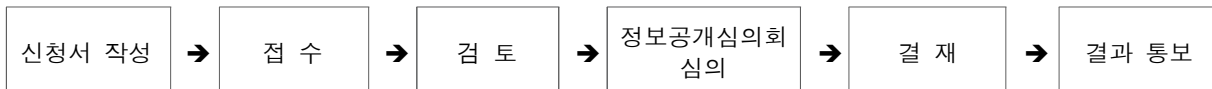
기피신청서

문서번호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휴 대 전 화 번 호 (또는 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팩 스 번 호			
기 피 신 청 위 원			
기 피 신 청 이 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종료 예정일:)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의 근거 조항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의 장) 인</p>				

※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해당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1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 보 공 개 위 임 장

문서번호

청 구 인 (위임인)	성 명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 소 (소재지)			
수 임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보공개 청구내용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앞면)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부서/담당자

이의신청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input type="checkbox"/> 개최 <input type="checkbox"/> 미개최 (사유:)					
결정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p>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 관 의 장) 인</p>						

※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우 /주소: /전화()/팩스()/담당부서/담당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소재지)	
정보공개청구내용	
공개결정내용	
공개결정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장) 인	

유의사항

-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기록물관리기관	기 타
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공개 건수	공 개 방 법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청구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 타
계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계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대신할 수 있음.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의2 관련)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예시>

-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국회법 제54조의2)
-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소위원회 회의(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
-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청문회(국회법 제65조제4항 단서)
- 본회의 의결 등으로 비공개한 본회의(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국회법 제118조제1항 및 제4항)
-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국회법 제158조)
-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
-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회의(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법 제14조)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가 아닌 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26조의2)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발언(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외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단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외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상·집행된 경비 내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국회건물의 경비에 관한 내용
- 국회의사당 건물의 마스터플랜
- 청사설계도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또는 참고인 명단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개최된 각종 회담, 간담회 및 행사 중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회담 등의 관련 정보 및 이에 지원 또는 소요된 경비 등의 정보
- 의장단,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 등의 활동내역과 경비내역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회활동의 특수성과 독립기관으로서의 재정적 자율성을 감안하여 계상·집행된 경비내역으로서 공개될 경우 독립기관의 자율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하여 수립되는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자료
 -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자료
- 공무원단체 등과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와 회답 사항
- 국회의원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을 이용한 자료요구 현황 또는 내용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의안소요비용의 추계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 요구·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또는 감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국회출입시스템에 등록된 방문인의 국회방문기록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이 허가한 법인 및 단체관련 사항 중 그 법인 및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예시>

- 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 등 관련 시설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